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1. 23
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1일

다. 상정 및 심사일자 : 제133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(2008. 1. 23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채진욱

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 
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  
조정하고,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 
예방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 개정 골자

1)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조정 함으로써  
계약절차를 간소화함(안 제4조제1항)

- 종 전 :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 
물품·용역

- 변 경 :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 
물품·용역

2)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중 수해복구 관련 공사를  
추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함(안 제12조)

-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일부개정 2007.9.20 대통령령 제20283호) 제10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 제4조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구가 발주하는 공사는 추정가액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, 물품·용역 등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,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안 제12조 주민 참여대상공사 범위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